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4
----------	-----

2023. 3. 24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종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2월 28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3월 16일

-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종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,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른 위임법명 개정(안 제1조)
- 법명 약칭 및 근거 조문 등 개정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)
- 주택의 소유자는 지원받은 소방시설의 기능을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을 변경하고,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안 제1조 및 제2조, 안 제4조 및 제5조는 근거법령을 정비함.
- 안 제7조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·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.

<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>

제10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(이하 "주택용소방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-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3. 3. 8. ~ '23. 3. 1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4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을 변경하고,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를 “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8조제3항” 을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” 으로, “도민” 을 “충청북도민” 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)” 을 “(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주택에 법 제8조제1항” 을 “주택에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” 으로, “도민” 을 “충청북도민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 을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 으로, “국민기초생활수급자” 를 “수급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주택의 신축·개축 등 허가·신고 시의 소방시설 설치 안내)” 를 “(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8조제1항 각호” 를 “법 제10조제1항 각 호” 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 을 “다음 각 호의” 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법 제9조에 의해” 를 “법 제12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) 주택의 소유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·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<u>도민</u>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장·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택화재 예방과 <u>도민</u>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)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10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충청북도민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) ① ----- ----- ----- 주택에 「<u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----- <u>충청북도민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 대상) ① ----- -----</p>

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

2. (생략)

② 도지사, 시장·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주택의 신축·개축 등 허가·신고 시의 소방시설 설치 안내) 시장·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지도·안내하여야 한다.

제5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)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.

1.·2. (생략)

-----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--
-- 수급자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제4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) -----
----- 법 제10조제1항 각 호-----

-----.

제5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) -----
--- 다음 각 호의 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) 그 밖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) -----
----- 법 제12조에 따라

-----.

제7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) 주택의 소유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·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(이하 “주택용소방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조(주택용소방시설)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”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.